국토교통부	보도설명자료	
	배포일시	2020. 3. 18(수) / 총 2매(본문 2)
담당 부서: 도시교통과 택시산업팀 신교통개발과	담 당 자	·과장 박준상, 팀장 오송천, 서기관 박효철 ·☎ (044) 201-3817, 4770, 4756
보 도 일 시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여객자동차법 개정으로 더 다양하고 더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이 가능해졌습니다.

<관련 보도내용(매일경제, 3.18(수)) >

◈ '폐업' 타다 500억 손실인데..."더 많은 타다" 나온다는 국토부
- 국토부 "모빌리티 업계 혁신 가속화 발판 마련" 자화자찬
- 이재웅 "타다 금지하고 수많은 타다? 국민 조롱하나? 분노

□ 지난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**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**은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'**모빌리티 혁신법**' 입니다.

□ 이번 여객자동차법 개정은 지난 1962년 제정 이후 이어진 버스, 택시 중심의 여객운송을 확장하여 '**플랫폼 운송**'이라는 **새로운 업역을 신설**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
○ 첨예한 갈등과 사회적 논란에서 벗어나 **새롭고 안정적인 법적 기반** 하에서 플랫폼 기업은 더욱 과감하고 혁신적인 시도를 할 수 있으며, **공정한 경쟁**을 통해 다양하고 질 좋은 서비스가 계속 등장할 수 있습니다.

□ 특히, **플랫폼 운송사업자**는 **렌터카를 통한 차량조달**도 가능해지므로 **법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없이** 사실상 현재의 영업방식과 동일하게 **안정적으로 영업**할 수 있습니다.

○ '**타다**'의 경우도 **1년 6개월** 간의 유예기간 동안 **현재 방식 그대로** 영업이 가능하며, 법 시행 후 **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**하면 안정적으로 **사업을 지속**할 수 있습니다.

○ 실제 **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**를 제공하고 있는 '**파파**', '**벅시**' 등 업체도 앞으로 **플랫폼 운송사업** 제도를 통해 **혁신적인 서비스**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.

○ 이번 법 개정안이 '타다 금지법'이 아니라, **렌터카 기반의 서비스도 제도권으로 명확히 수용**하여 '**혁신의 場**'을 열어주는 '**모빌리티 혁신법**'으로 규정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.

□ 현재 수많은 모빌리티 업체들이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**새로운 사업모델 발굴**과 **투자유치**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.

○ 이제는 **제도의 안정적 정착**과 진정한 제도화의 완성을 위한 **하위법령 후속논의**를 바라고 있습니다.

○ 정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**기여금, 총량관리** 등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들을 개정법률 시행까지 남은 **향후 1년 동안** 업계와의 **지속적인 협의**와 **소통**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**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**할 계획입니다.

□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이 **더 창의적이고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**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국민들에게 **더 많고, 더 다양하고, 더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**가 제공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택시산업팀 박효철 서기관(☎044-201-475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